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

1. 제안이유

구)서흥여객 부지는 강남권의 교통, 주거, 상업의 요충지로서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내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버스터미널 (시외+시내) 이전으로 교환, 취득한 구)서흥여객 부지를 강북과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권 요충지로서의 개발 필요
- 군민 설명회 개최 후 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광호텔 투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필요

3. 처분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외 1필지
- 면 적: 2,435m²
- 대부 (사업)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 처분시기: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준공 후)
- 재산처분 내용

(단위: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2,435	1,278,923,700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350	대지	2,128	1,238,921,600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유치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119-2	잡종지	307	40,002,100		

4. 추진경위

- 2010. 2월: 농어촌버스 이전에 대한 MOU체결(서흥여객(주) ↔ 거창군)
- 2010.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2010.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교환취득)
- 2014.11월: 농어촌버스 터미널 이전건설 업무이행협약 체결
- 2015. 9월: 부지 교환 등기 및 서흥여객 이전 완료
- 2016. 3월: 부지내 사유지 취득 완료(김천리 119-2번지 860m²)
- 2016. 4월: 공유재산 용도변경(도시건축과⇒재무과) 및 지장물 철거
- 2016. 5월: 현 양동인 군수 공약사업 선정(구 서흥여객 부지개발)
- 2016. 5월: 「군민 소통 한마당」 부지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 2016.11월: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7. 2월: 재산의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 분할 측량 완료

5. 향후계획

- 2017.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창군의회 심의 및 승인
- 2017. 3월: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공개모집
- 2017. 4월
 -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대부자선정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017. 5월 이후: 관광호텔 설계 및 착공
- 대부기간 만료(관광호텔 준공 후) 시: 재산 매각
- ※ 대부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7. 기대효과

-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외부 관광객 유입 증대 기대
- 공유재산의 대부료 수입으로 군 세입 증대

8. 위치도(현장사진) 지적도 ⇨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외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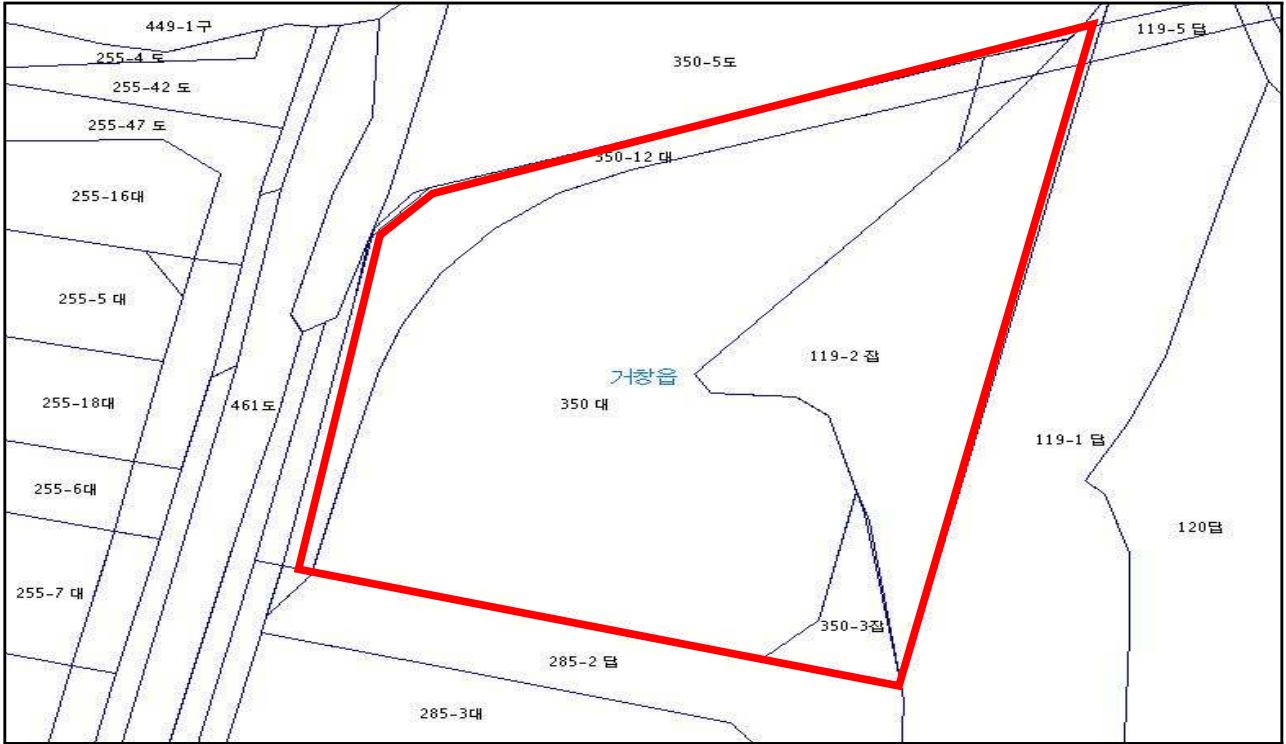


□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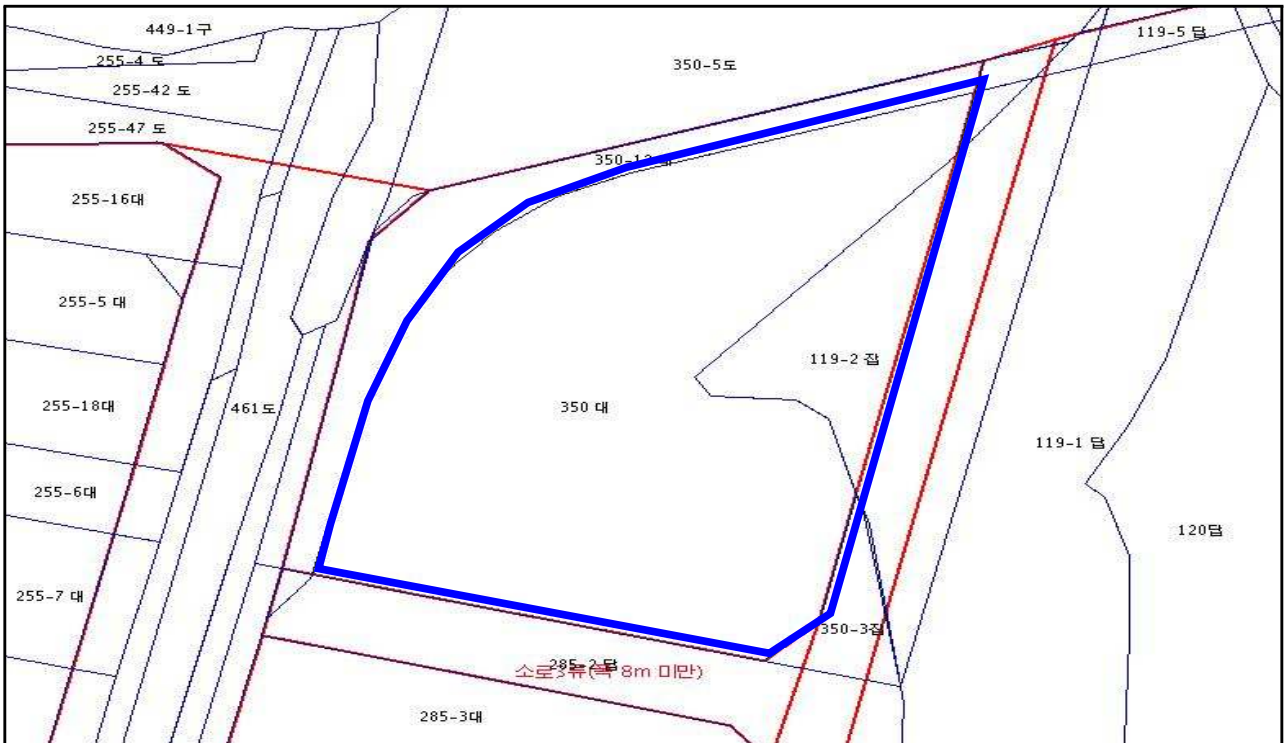


지적도(사업부지) 변경사항

■ 당초: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3필지 3,521㎡



■ 변경: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1필지 2,435㎡



2 가조은천 관광지 활성화사업

1. 제안이유

가조은천관광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과 온천지구 입구 방치된 건물 정비로 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조은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관리사무소, 온천수 배수지가 위치한 토지는 경상남도로 환지가 되었고
- 시설물은 개인시설로 정리되어 온천수 공급 중에 시설물 소유자와 마찰 시 온천수 공급단절 우려가 예상되고,
- 관리사무소 등 불법건축물을 정리하여 관광지 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코자 함.

3. 취득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대지면적: 1,117.6㎡ (토지소유자 : 경상남도)
- 사업기간: '17. 01월 ~ '18. 12월
- 사 업 비: 350백만원<군비 350>
- 주요기능: 온천수 관리

4. 재산취득 내용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용도)	취득면적				
취득	토지	가조면 일부리 1302	잡	1,117.6	134,894,320	2017	가조은천관광지 활성화사업	경상남도

※ 기준가격은 2016년도 공시지가 기준가격임. (본 감정평가시 변동가능성 있음.)

5. 추진경위

- 2005. 05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유지 등기
- 2015. 01월: 온천공 3공 공유화 완료
- 2015. 06월: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제정

6. 향후계획

- 2017. 02월~: 경상남도 협의 및 토지 매입
- 2017. 07월~: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

7.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8. 기대효과

-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및 배수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으로 온천지구 활성화에 기여
- 시설물 재정비, 유지관리로 내방객에게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 제공

9.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전경사진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7.1.13.] 제26조제5항, 제26조제6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2016.7.12.>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40점)	일자리창출 기여도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	A : 200명 이상 : 20 B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15 C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 D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 E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해당지역 원자재 조달계획	A : 70% 이상 : 20 B : 60% 이상 : 15 C : 50% 이상 : 10 D : 40% 이상 : 5 E : 30% 이상 : 2	20
정성적 평가 (60점)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수행능력, 실적, 신인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평가함			60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10>에 따른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2.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제1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2) 관광·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3. 세부기준

가. 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공무원(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및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5)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의 참석여부를 우선으로 즉시 확인하여 불참 확인 시 해당 입찰참가자가 다시 추첨하게 하도록 하여 선정한다.
- 6)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등)을 5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7)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의 평가는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2)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능력평가 (70)	정량평가 (4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A: AAA~BBB- 에 준하는 등급 : 10 B: BB+, BB0 에 준하는 등급 : 9 C: BB- 에 준하는 등급 : 8 D: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7 E: CCC+ 에 준하는 등급 : 6	10
		사업운영기간	해당 지역 (시도)에서의 관련 사업 운영 기간 A: 36개월 이상 : 10 B: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8 C: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6 D: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 E: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	10
		납세실적	법인소득세 연평균 납부실적 A: 5억원 이상 : 10 B: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 C: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6 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 E: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	10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 현재 고용 중인 상시종업원 수 A: 200명 이상 : 10 B: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8 C: 50명 이상 100명 미만 : 6 D: 30명 이상 50명 미만 : 4 E: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10
	정성평가 (30)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신인도, 수행능력,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성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30
가격평가(3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해당입찰가격}}{\text{최고입찰가격}}$		30	

- 3)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7:3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6:4 또는 8:2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가격평가와 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정량평가의 재무상태 평가 방법은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6) 정량평가의 사업운영 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입찰 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 7) 정성적 평가는 선정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8)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낙찰자 결정

- 1) 제안서 평가 결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점수의 합계가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2)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3)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결정한다.